

울산광역시북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공 보	기 관 의 장

제 794 호 2013. 1. 7(월)

규 칙

-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제400호[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 2
-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제401호[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 8
-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제402호[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10
-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제403호[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15

고 시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3-2호[하천점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20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3-4호[도로명주소 고시] 21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3-5호[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23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3-6호[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사항 고시] 25

공 고

- 울산광역시 북구 고고 제2013-10호[2013년도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 공고] 27
- 울산광역시 북구 고고 제2013-11호[2013년도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주민수 공고] 28
- 울산광역시 북구 고고 제2013-12호[2013년도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 및 주민소환투표청구 서명인 수 공고] 29
- 울산광역시 북구 고고 제2013-16호[울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발전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31

회 관								
--------	--	--	--	--	--	--	--	--

발행: 울산광역시북구 편집: 기획홍보실(☎241-7124 행정7124)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윤종오



2013년 1월 7일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제400호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권한을 위임받은 사무 중 일부를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재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중 “구청장”을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 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조에 따라”로 한다.

제4조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보건소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

성과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비고
환경 위생과	1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사무 ① 영양조사원의 임명 또는 위촉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22조	
	2	감염병 예방 및 차단조치에 관한 사무 ① 감염병 예방 및 관리계획의 수립 등 ② 감염병의 예방관리 등 ③ 감염병에 관한 역학조사 ④ 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 ⑤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등 ⑥ 감염병 위기시 감염병 관리기관의 설치 등 ⑦ 감염병환자 등의 관리 ⑧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⑨ 감염병환자 등의 입원통지 ⑩ 감염병의 예방조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3조 같은 법률 제16조 같은 법률 제18조 같은 법률 제29조 같은 법률 제36조 같은 법률 제37조 같은 법률 제41조 같은 법률 제42조 같은 법률 제43조 같은 법률 제49조	
	3	<삭제>		
	4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에 관한 사무 ① 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자 발생보고 ②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 실시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5조 같은 법 제8조	

실과 번호	위 입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비고
5	결핵예방에 관한 사무 ① 결핵집단발생시의 조치 ② 결핵환자 등의 의료	「결핵예방법」 제10조 같은 법 제18조	
6	<삭제>		
7	의료기관 등에 관한 사무 ①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 개설허가 및 변경허가 ② <삭제> ③ 시정명령 등 ④ 개설허가의 취소 등 ⑤ 과징금처분 ⑥ 청문 ⑦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⑧ 업무개시명령 ⑨ 보고와 겸사업무 등 ⑩ 의료지도원 위명	「의료법」 제33조제4항 및 제5항 같은 법 제63조 같은 법 제64조 같은 법 제67조 같은 법 제84조 같은 법 제92조 같은 법 제59조 같은 법 제61조 같은 법 제69조	
8	의료업무에 관한 사무 ① 의료기관세탁물처리업의 신고 등 ② 감염예방교육 ③ 세탁물처리실적 관리 ④ 행정처분 ⑤ 청문 ⑥ 세탁물처리업자 또는 의료기관의 지도 및 보고 등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제7조 같은 규칙 제8조 같은 규칙 제9조 「의료법」 제16조 및 제63조 「의료법」 제84조 같은 규칙 제11조	

실과 번호	위 입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비고
9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당직의료기관의 지정 ② 급차 등의 다른 용도에의 사용금지 ③ 구급차 등의 운용상황 지도·감독 ④ 의료기관 또는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자의 의료기관 등의 개설영업허가 취소폐쇄명령 및 업무정지(폐쇄명령은 신고의 경우에 한함) ⑤ 청문 ⑥ 과징금의 부과징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4조 같은 법률 제45조 같은 법률 제50조 같은 법률 제55조제2항 같은 법률 제56조 같은 법률 제57조	
10	약사에 관한 사무 ① 약국제제의 제조신고(광역시장의 허가 를 받아 개설한 의료기관에 한함)	「약사법」 제41조	
11	의약품판매업에 관한 사무 ① 한약업사의 허가대장 관리 및 허가증 교부 ② 한약업사의 자격증명서 교부 ③ 한약업사의 영업소 이전허가 ④ 의약품도매상의 허가 및 변경허가 ⑤ 의약품도매상의 허가대장 관리 및 허가증 교부 ⑥ 불량 의약품 폐기 ⑦ 허가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⑧ 청문 ⑨ 과징금처분 ⑩ 과태료의 부과징수	「약사법 시행규칙」 제53조, 제5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같은 법 제44조,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 같은 법 제71조 같은 법 제76조 같은 법 제77조 같은 법 제81조 같은 법 제98조	

실과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비고
	12	마약류에 관한 사무		
		① 마약류취급자(마약류도매업자)의 허가 및 변경허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제3호	
		② 마약류관리자의 지정 및 지정사항 변경	같은 법률 제6조제2항	
		③ 허가증 등의 교부와 등재 및 지정사항 변경	같은 법률 제7조제1항	
		④ 허가증 지정서의 재교부	같은 법률 제7조제2항	
		⑤ 폐업 등의 신고 및 허가증 등의 반납	같은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⑥ 마약의 구입서 및 판매서 교부	같은 법률 제10조	
		⑦ 사고마약류의 처리 등	같은 법률 제12조	
		⑧ 자격상실자의 마약류 처분	같은 법률 제13조	
		⑨ 마약 등의 판매 승인	같은 법률 제26조	
		⑩ 마약의 도·소매 보고 등	같은 법률 제27조 및 제29조	
		⑪ 마약류의 인계 및 신고	같은 법률 제33조	
		⑫ 허가 등의 제한	같은 법률 제37조	
		⑬ 출입·검사와 수거	같은 법률 제41조	
		⑭ 폐기명령 등	같은 법률 제42조	
		⑮ 업무보고 등	같은 법률 제43조	
		⑯ 마약류취급자의 허가 또는 지정취소 및 마약류 사용의 정지명령	같은 법률 제44조	
		⑰ 청문	같은 법률 제45조	
		⑱ 과징금처분	같은 법률 제46조	
		⑲ 과태료	같은 법률 제69조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법령개정 미적용, 사무의 불일치 등으로 인한 위임사무명 및 근거법령 등 위임사항을 일체정비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관련 규칙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무명 및 근거법령이 다른 사무 조정
 - 감염병 예방 및 차단조치에 관한 사무
(「전염병예방법」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
- 나. 사무 자체가 존재하지 않은 사무의 삭제
 - 기생충 예방에 관한 사무 등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윤종오



2013년 1월 7일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제401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⑤ 당직근무자에게 당직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평일 숙직수당과 휴무일 및 휴무일 전일 일·숙직수당은 차등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재택 당직근무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당직수당 금액을 명시한 조항을 개정함으로써 수당 조정을 쉽게 하고, 울산광역시, 타 구·군 수준으로 상향조정하여 직원 사기 진작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당직근무수당 금액 명시 조항 개정(제6조제5항)
 - 현실에 맞게 당직근무수당을 조정할 수 있도록 당직비 명시 조항 개정
 - **기존:** 평일 숙직수당 5만원, 휴무일 및 휴무일 전일 일·숙직수당 6만원(1회, 1명당) ⇒ **변경:**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평일 숙직수당과 휴무일 및 휴무일 전일 일·숙직 수당은 차등지급 할 수 있음.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2013년 1월 7일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제402호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의 여유자금은 수익성과 안정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금고에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상품에 예치·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자금으로 구분하여 별도의 계좌로 관리·운용한다.

④ 제3항의 적립기금은 일정금액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적립해 나가며, 운용자금은 적립금 이자수입 등 일정금액으로 매년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기금운용 계획) ①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기금운용 계획은 운용 총칙과 자금운용 계획으로 구성된다.

② 운용 총칙에는 기금의 설치 목적, 기금의 조성·운용 등에 관한 총괄적 사항을 규정한다.

③ 자금운용 계획에는 해당 연도의 운용자금 사용계획 등 그 밖의 기금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한다.

제4조(지원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업 또는 활동을 하는 문화예술단체와 개인으로 하되,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우리 구에서 사업 또는 활동을 하는 단체와 개인에 한정한다.

제5조(기금의 지원 원칙) ① 기금의 지원은 제2조제3항의 운용자금만을 말하며, 조례 제7조제2항의 기금운용 계획에 따른다.

② 기금의 지원은 지원사업 소요경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기금의 지원신청) ① 구청장은 기금 지원대상자를 공개 선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접수기일을 명시하여 구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기금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의 지원결정 등) ① 구청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기금지원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조사·검토하고, 그 결과 기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례 제12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 지원을 결정한다.

1. 관련 법규에 대한 적법성
2. 기금 용도의 적합성
3. 사업활동 영역의 적정성
4. 사업수행 능력의 적정성
5. 사업내용의 적정성
6. 그 밖의 기금 지원의 취지 부합성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금의 청구) 제7조제2항에 따라 기금지원금의 지원 결정을 통보받은 자는 사업개시 1개월 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기금지원금 청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금의 교부)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기금지원금 청구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해당사업 개시 전까지 지원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금지원금을 교부할 때에는 법령과 조례의 범위에서 지원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0조(정산서 제출) ① 제9조에 따라 기금지원금을 교부받은 자는 사업종료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금지원금 정산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지원금 중 집행잔액은 제1항에 따른 기금지원금 정산보고서를 제출할 때에 함께 반납하여야 한다.

제11조(정산검사) 구청장은 기금지원금을 교부받은 자로부터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금지원금 정산보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보고서의 내용을 검사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지조사하여 그 지원사업의 수행 상황과 실적이 당초에 결정된 사업내용과 조건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검사할 수 있다.

제12조(비치 서류) ①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비치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적립기금 관리 기록대장 (별지 제4호서식)
2. 운용자금 관리 기록대장 (별지 제5호서식)
3. 문화예술진흥기금 연도별 지원실적 (별지 제6호서식)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기금의 관리·운용 <제2조>

-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관리·운용
- 기금의 여유자금은 구금고에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상품으로 예치·관리
-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자금으로 구분하여 별도 계좌로 관리·운용
- 운용자금은 적립금 이자수입 등 일정금액으로 매년 지원하는 자금

나. 기금의 운용계획 <제3조>

- 기금운용계획은 운용 총칙과 자금운용계획으로 구성
- 운용총칙에는 기금의 설치목적, 기금의 조성·운용 등에 관한 사항 규정

다. 지원대상 <제4조>

-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우리구에서 사업 또는 활동을 하는 단체와 개인

라. 기금의 지원 원칙 <제5조>

- 지원은 운용자금에 한하며, 지원사업 소요경비의 일부를 지원

마. 기금 지원신청 <제6조>

- 기금 지원대상자를 공개 모집시 구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

바. 기금의 지원결정 <제7조>

-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 지원을 결정

사. 지원금의 청구 <제8조>

- 사업개시 1개월 전에 기금지원금 청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

아. 지원금의 교부 <제9조>

- 사업개시 전까지 교부하며, 교부시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음

자. 정산서 제출 <제10조>

- 사업종료 1개월이내에 기금지원금정산보고서와 함께 집행잔액 반납

차. 정산검사 <제11조>

- 기금지원금정산보고서는 내용을 검사하고, 필요시 현지조사 실시
- 카. 비치서류 <제12조>
- 적립기금 관리 기록대장
 - 운용자금 관리 기록대장
 - 문예진흥기금 연도별 지원실적
- 타. 시행일 <부칙>
- 공포한 날부터 시행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윤승오



2013년 1월 7일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제403호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
례 시행규칙”을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
에 관한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 중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
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호”를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
례”라 한다) 제11조제3항”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제10조”를 “제15조”로 한다.

제4조 중 “제11조제2항”을 “제12조제2항”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제11조의2제2항”을 “제13조”로 한다.

제6조는 삭제한다.

제7조제1항 중 “제14조의 2제1항”을 “제22조제2호”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제14조제2항”을 “제9조제4항”으로 하고, 제2항과 제4항 중 “제14조제3항”을 “제9조제5항”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제15조”를 “제10조”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제5조”를 “제11조”로 하고, 제2항 중 “제14조제3항”을 “제9조제5항”으로 한다.

제11조는 삭제한다.

별표 1의 배출시간란 중 “수거일 아침 3시”를 “수거일 아침 5시”로 하고, 수거시간란 중 “새벽 4시부터”를 “아침 6시부터”로 하며, 주) 중 “구정”을 “설날”로 한다.

별표 2의 외관표기 형식란 중 “배출자: 동 번지 호 (관리번호:)”를 “배출자 주소: ”로 하고, 같은 란 문의처 중 “219-7384,7394”를 “241-7813”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대행신청업자란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하고,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10조”를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대행신청업자란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하고,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10조”를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제1조,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울산광역시 북구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함에 따른 계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행구역)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을 “갑”이라 하고, 대행수탁자를 “을”이라 한다.

② “을”이 “갑”을 대행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야 할 구역은 (으)로 한다.

③ “을”은 제2항에서 “갑”이 지정한 구역 외에 연립·다세대·단독주택의 경우 “갑”의 요구가 있으면 연립·다세대·단독주택을 대행구역으로 포함한다.

같은 서식 제3조제2항 중 “30일전에”를 “30일 전에”로 하고, 제3항 중 “2개월 전 조례와 규칙에 의한”을 “2개월 전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으로 하고, “체결시 그 동안”을 “체결 시 그동안”으로 한다.

같은 서식 제4조제2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익월”을 “다음 달”로 한다.

같은 서식 제5조제1항 중 “법”을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로 한다.

같은 서식 제7조제1항 중 “보관시”를 “보관 시”로 한다.

같은 서식 제11조 중 “수행중”을 “수행 중”으로 한다.

같은 서식 제12조 중 “수행중”을 “수행 중”으로 하고, “3인이상”을 “3인 이상”으로 한다.

같은 서식 제14조 중 “법시행령”을 “법 시행령”으로 하고, “법시행규칙”을 “법 시행규칙”으로 하며, “환경부예규”를 “환경부 예규”로, “상이힐”을 “서로 다들”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상단 중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을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 한다.

같은 서식 제1조 중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제4항에 의하여”를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에 따라”로 한다.

같은 서식 제3조 중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같은 서식 제4조 중 “20일전까지”를 “20일 전까지”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개정('11. 10. 24.)으로 인한 일부개정

2. 주요내용

가. 시행규칙 제명 변경

○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나. 조례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변경 및 삭제·추가 조항 반영

다. 그 밖에 각종 용어를 알기 쉽도록 정비

울산광역시 복구고시 제2013-2호

하천점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하천법」 제30조제6항, 제33조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거 하천점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허가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01월 07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성 명	한라상조(주) 대표이사 박영배					
주 소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482-11					
점용위치	상안동 366, 365 천곡동 1056-42	하 천 명	천 곡 천			
점용목적	보도교 신설에 따른 공작물설치	점용면적 (㎡)	구 분 지방하천	일시 891	영구 44	
점용기간	◦ 일 시 ◦ 영 구	2013. 01. 07. ~ 2013. 05. 06.				
하천공사의 명칭	교량 설치공사	하천공사 목적	주택건설사업에 따른 보도교 설치			
하천공사 시행자 성명(주소)	점용자와 동일	공사기간	2013. 01. 07. ~ 2013. 05. 06.			
공사위치	상안동 366번지 외 2필지					
토지 소재지	소재지	지 번	지 목	대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구,군,동,리	366	천	1,798	663	국(농림수산부)
	북구 상안동	365	제	1,660	43	국(농림수산부)
	천곡동	1056-42	천	8,621	229	국(국토해양부)
계				935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3 - 4호

도로명주소 고시

우리구 관내 건물에 대하여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7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도로명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상원지길 26-1외 5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청 민원지적과 (☎052-241-7585)에 문의 또는 울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www.bukgu.go.kr)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3. 1. 7.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도로명주소 고시 조서

순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비고
1	울산광역시 북구 장평동 133-28	울산광역시 북구 상원지길 76-1(상평동)	2013-01-07	기존 자연마을인 상원지마을에 위치하여 도로명 부여	2004-08-09	
2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672-14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2길 25(호계동)	2013-01-07	호계시장에 위치하여 도로명 부여	2004-08-09	
3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672-1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2길 25-2(호계동)	2013-01-07	호계시장에 위치하여 도로명 부여	2004-08-09	
4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명촌 618 8-1L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7길 29(진장동)	2013-01-07	옛지명이며 현재도 사용하는 명칭이므로 도로명 부여	2004-12-27	
5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명촌 113B 50L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12길 24-13(명촌동)	2013-01-07	옛지명이며 현재도 사용하는 명칭이므로 도로명 부여	2004-12-27	
6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명촌 888 6L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로 32(진장동)	2013-01-07	명촌동에 소재하는 도로로 변경중인 명촌동의 이름 부여하여 도로명 부여	2008-02-29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3 - 5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우리구 건물의 멸실 등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폐지하고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7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도로명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동해안로 776-5외 1건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청 민원지적과 (☎052-241-7585)에 문의 또는 울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www.bukgu.go.kr)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3. 1. 7.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등에 의거 새로이 도로명주소를 부여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조서

연번	도로명주소	증전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사유	비고
1	울산광역시 북구 동해안로 776-5	울산광역시 북구 어물동 1354외 1필지	2013-01-07	멸실	
2	울산광역시 북구 송내13길 22	울산광역시 북구 화룡동 425-1	2013-01-07	멸실	

울산광역시북구 고시 제2013 - 6호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사항 고시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허가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3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고시내역

허가 년월일	허가 번호	피허가자		취용장소	면적 (권경)	허가기간	취용목적	비 고
		주소	성 명					
'12.12.27.	2013-1	울산광역시 북구 산하동 4-1	윤길용	북구 산하동 957-3번지선	3㎡	2013. 1. 1 ~ 2014. 12. 31.	종묘배양장 해 수인수용 관로 설치	조건부 허 가
'12.12.27.	2013-2	울산광역시 북구 신명동 46번지	오시환	북구 신명동 287-1번지 일원 공유수면	8.40㎡(○1 20mm)	2013.1.1~ 2014.12.31	농작물경작 및 미역간이보관 용 창고 사용	조건부 허 가
'12.12.27.	2013-3	울산광역시 북구 구유동 364번지	강동관 광개발 주식회 사 대표 장광규 이정원	북구 구유동 364 지선	90㎡ (D=100m m)	2013.1.1~ 2013.12.31	관로매설 및 해수인수	조건부 허 가
'12.12.27.	2013-4	울산 북구 신명동 151-13	박향례	북구 신명동 151-13 지선	6.7㎡ (D=50mm)	2013.1.1~ 2013.12.31	관로매설 및 해수인수	조건부 허 가
'12.12.27.	2013-5	울산 북구 어물동 1338	이동형	북구 어물동 1335-3지선	46㎡	2013.1.1~ 2013.12.31	나무식재 (조경용)	조건부 허 가
'12.12.27.	2013-6	울산 북구 정자동 637-10	김명곤	북구 산하동 966-2 지선	16㎡	2013.1.1~ 2013.12.31	공동펌프장 실지 1동	조건부 허 가
'12.12.27.	2013-7	울산 북구 정자동 637-10	김명곤	북구 산하동 966-2 지선	18.5㎡ (D=125m m)	2013.1.1~ 2013.12.31	관로매설 및 해수인수	조건부 허 가

허가 년월일	허가 번호	피허가자		적용장소	면적 (관경)	허가기간	적용목적	비 고
		주 소	성 명					
'12.12.27.	2013-8	울산 북구 산하동 367-2	박관기	북구 산하동 367-2 지선	19.125㎡ (D=125mm)	2013.1.1~ 2013.12.31	관로매설 및 해수 인배수	조건부 허가
'12.12.27.	2013-9	울산 북구 산하동 16-1	안몽식	북구 산하동 16-1 지선	18㎡ (D=150mm)	2013.1.1~ 2013.12.31	관로매설 및 해수 인수	조건부 허가
'12.12.27.	2013-10	울산 북구 정자동 637-5	김영득	북구 정자동 637-5 지선	12㎡ (D=100mm)	2013.1.1~ 2013.12.31	관로매설 및 해수 인수	조건부 허가
'12.12.27.	2013-11	울산 북구 산하동 941	신정환	북구 산하동 941 지선	15.25㎡ (D=100mm)	2013.1.1~ 2013.12.31	관로매설 및 해수 인배수	조건부 허가
'12.12.27.	2013-12	울산 북구 구유동 105	윤성천	북구 구유동 재전항 내	45㎡	2013.1.1~ 2013.12.31	전복 임시 보관장소	조건부 허가
'12.12.27.	2013-13	울산 북구 산하동 4-1	최재용	북구 산하동 957-3 지선	12.75㎡ (D=125mm)	2013.1.1~ 2013.12.31	관로매설 및 해수 인수	조건부 허가
'12.12.27.	2013-14	울산광역시 북구 산하동 941번지	김명호	울산광역시 북구 산하동 966번지 지 선	9㎡	2013. 1.1 ~ 2013. 12. 31.	관로매설 및 해수인배수	조건부 허가
'12.12.27.	2013-15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 동 엘지진 로 아 파트 106동 210	의용소 방대장 백진환	울산광역시 북구 산하동 957번지 도 로에 인접한 공유수면	36㎡	2013. 1. 1. ~ 2013. 3. 31.	동부소방서 의용소방대 간이사무실	조건부 허가

울산광역시북구 공고 제2013 - 10호

2013년도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 공고

「주민투표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2013년도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단위 : 명)

계	내 국 인	외 국 인	재외국민
134,717	134,562	115	40

- ※ 내 국 인 : 2012년 12월 31일 현재 울산광역시 북구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9세 이상의 주민
(「공직선거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권이 없는 자 제외)
- ※ 외 국 인 : 2012년 12월 31일 현재 울산광역시 북구에 등록되어 있는 영주의 체류 자격을 갖춘 19세 이상 외국인
- ※ 재외국민 : 2012년 12월 31일 현재 울산광역시 북구에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19세 이상의 재외국민

2013년 1월 7일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울산광역시북구 공고 제2013 - 11호

2013년도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주민수 공고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19세 이상의 주민수(「공직선거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권이 없는 자 제외)와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를 위하여 연서하여야 할 연서 주민수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단위 : 명)

19세 이상 주민총수				연서 주민수
계	내국인	재외국민	외국인	
134,615	134,562	40	13	3,366

- ※ 내 국 인 : 2012년 12월 31일 현재 울산광역시 북구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9세 이상의 주민
(「공직선거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권이 없는 자 제외)
- ※ 외 국 인 : 2012년 12월 31일 현재 울산광역시 북구에 등록되어 있는 영주의 체류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경과한 19세 이상의 외국인
- ※ 재외국민 : 2012년 12월 31일 현재 울산광역시 북구에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19세 이상의 재외국민
- ※ 연서주민수 : 19세이상 주민총수의 1/40

2013년 1월 7일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3 - 12호

2013년도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 및 주민소환투표청구 서명인 수 공고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및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역선거구 의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 및 주민소환투표청구 서명인 수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3. 1. 7.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구청장

(단위 : 명)

구 분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인 수	비 고	
북 구	134,575	20,18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5/100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 선거구 안의 동 전체수가 3개 이상일 경우에는 1/3이상의 동에서 최소서명인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구 청 장	농소1동	21,659		1,346
	농소2동	23,703		1,346
	농소3동	27,955		1,346
	강동동	4,023		604
	효문동	22,066		1,346
	송정동	14,930		1,346
	양정동	9,834		1,346
	염포동	10,405		1,346

○ 구의원

(단위 : 명)

구 분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인수	비 고		
구 의 원	북구 1선거구	40,612	8,1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20/100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 선거구 안의 동 전체수가 3개 이상일 경우에는 1/3이상의 동에서 서명을 받아야 한다. 	
	동	농소1동	21,659		407
	동	강동동	4,023		407
		송정동	14,930	407	※ 각 동에 표시된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인수는 1/3이상의 동에서 서명을 받아야 할 최소 서명 인수임
	북구 2선거구	51,658	10,33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구 안의 동 전체수가 2개인 경우 각각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100이상의 서명을 받되, 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20/100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동	농소2동	23,703		238
	동	농소3동	27,955		280
		북구 3선거구	42,305	8,46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20/100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 선거구 안의 동 전체수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1/3이상의 동에서 서명을 받아야 한다.
	동	효문동	22,066	424	
동	양정동	9,834	424		
동	엽포동	10,405	424		

※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는 2012년 12월 31일 현재의 주민등록표 및 외국인 등록표에 의하여 산정하며,

1. 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우리구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공직선거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
2.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자 중 같은 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구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자로 산정

※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인수

1. 구청장 : 청구권자 총수의 15/100이상
2. 구의원 : 청구권자 총수의 20/100이상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3 - 16호

울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발전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울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5조에 의거하여 자원봉사 활동의 발전에 관한 기본시책 수립 등을 위한 울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 발전위원회 위원을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 합니다.

2013. 1. 7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모집인원 : 8명
2. 접수기간 : 2013. 1. 7.(월) ~ 1. 17.(목)
3. 신청서식 : 북구청 홈페이지(www.bukgu.ulsan.kr)게재 및 북구청 복지지원과 비치
4.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증명사진 1부
5. 접수처 및 방법
 - 접 수 처 : 북구청 복지지원과(자원봉사 담당자 ☎ 052-241-7633)
 - 접수방법 : 직접방문, 우편 및 이메일(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우 편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북구청 복지지원과 자원봉사 담당
 - 이메일 : inter1209@korea.kr
6. 활동내용
 - 자원봉사활동의 발전에 관한 기본시책 수립
 - 자원봉사관련 시책의 조정 및 협의
 - 자원봉사 공공사업의 실시 및 관련 주요사항의 심의·의결
 - 울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센터의 건의사항 및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심의·의결
7. 자격요건
 - 자원봉사 관련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대학교수, 시민단체 활동자, 기업관계자, 자원봉사단체 활동자 등)
 - 위원회 여성비율 재고를 위하여 여성 신청자 우선
8.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북구청 복지지원과(손성훈 241-76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